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국회공청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 공청회

■ 일시

2001년 5월 22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110-0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 한글회관 302호
전화/팩스 겸용 02-736-5158
<http://www.genocide.or.kr>

후원을 위한 계좌번호

국민은행 367-01-0050-121 예금주/민간인학살규명범국민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국회공청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 공청회

■ 일시

2001년 5월 22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국회공청회

【진행순서】

- ▶ 사회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 10:00~10:10 인사말 : 김원웅 국회의원·채의진 상임대표
- ▶ 10:10~10:30 주제발표 : 민간인학살 통합입법시안 발표
발표자 : 장완익 변호사
- ▶ 10:30~12:00 토 론
김원웅 국회의원
김순태 교수(방통대 법학과)
황인성 사무국장(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정맹근 회장(경남산청 시천·삼장유족회)
이영일 소장(정책실장,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족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면서 -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한반도 전역에서는 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전투상황과 상관없이 학살당한 희생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집단학살은 그것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국제법적인 관습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명이 작전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죽음의 문턱을 넘었음에도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1960년 4·19혁명직후 국회에 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국적인 피해접수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나, 5·16쿠데타로 조사활동이 중단되고, 당시 발굴된 유골과 자료들은 군사정부에 의해 땅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후 50년, 이제는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50여년간의 차디찬 남북대결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려는 조용한 기운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부둥켜안고,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기억을 명백히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영혼을 위로할 때입니다. 이 시대 절실한 과제인 민족화합과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국회, 정부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개별적인 여러 건의 진상규명 요구를 하나의 통합된 범으로 묶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불행을 거울삼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5월 22일

국회의원 김 원 응

“통합 특별법 발의에 부쳐 ”

6·25 한국전쟁 전 혹은 전쟁기간동안 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및 미군에 의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과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온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50여 년이란 그 긴 세월동안 아무런 죄도 없이 줄지에 사랑하는 부모형제자매들이 학살당했던 저희 유족들의 삶은 삶이 아니라 차라리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크게 한 번 소리내어 웃어 보지도 못했고, 울어 보지도 못했고, 소리내어 외쳐보지도 못한 채 뼈를 깎아 내는 아픔과 슬픔, 분노와 고통을 깊숙이 누적시키며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늘 상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목숨만을 부지해 왔습니다.

소위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지난 해 2000년에는 지금의 김대중 대통령이 영광의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여 전 세계가 다 아는 위대한 인권복지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에게 박탈당한 우리들의 생명과 인권과 행복은 도대체 언제 그 누구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전후 억울하게 학살당한 전국에 있는 피학살자들의 유족을 대표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 동안 저희 유족들은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때는 입도 뻥긋 못했지만 4·19 직후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때에는 문경을 비롯한 함평, 산청, 고양 등 전국 각지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조속히 저희들의 통한(痛恨)을 풀어 주십시오 수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문민정부하고 자처한 김영삼 정권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거창 사건」에 대해서만 1996년 1월 6일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금 명예

회복과 위령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 명예회복 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시기로 보나 규모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아 거창과 제주 4·3 사건을 상괘(上卦)하거나 유사한 사건들을 우선 처리했거나, 함께 처리했어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창과 제주 4·3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한 김영삼, 김대중 양 정권은 형평의 원칙도 무시하는 무원칙의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일류 국가로 만든다는 정부와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무원칙해도 되는 겁니까?

이 기회에 저는 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편찬된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에 대하여 한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도 강도 높게 이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척이나 착잡했습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거나 은폐한 것이 허다한 줄로 압니다. 저는 그 한 예로 『문경 사건』에 대한 사후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정부 당국의 왜곡·은폐행위와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다수 양심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당했었던 1949년 12월 24일 발생한 문경의 석달동 양민 86명 집단학살 사건은 국군 제 3사단 25연대 3대대 7중대의 2소대(소대장 안택효 중사)와 3소대(소대장 유진규 소위) 병력 69명이 저지른 만행이었음을 사건 즉시 본국에 보고된 미 국동군 사령부 정보일지와 주한 미 임시고문단장 로버츠(Roberts) 준장의 비망록이 증명하고 있으며,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방부의 2차에 걸친 현장 답사와 증언 청취를 통해서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이를 공비들이 저지른 만행이었다고 피학살자들의 호적에 왜곡해서 기록한 채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에서 그리고 언론이나 학계에서 과연 일본을 향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건에 대하여 규탄하고 수정을 요구할 자격과 양심이 있는 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저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남의 나라인 일본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안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해도 괜찮다는 것인지...대한민국의 양심들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해결은 이제 제 16대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정말 너무도 늦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가 16대 국회의원에 의해서 속 시원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2000년) 2월에 한국 인권재단이 주최한 『제주인권학살회의 2000』을 계기로 회의에 참석했던 뜻 있는 몇 분의 학자들, 인권운동가, 언론인들 그리고 유족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해 9월에 1,000여 명의 발기인들이 출범시킨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김원웅 의원이 중심이 된 국회의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이 합심하여 지난 2000년 11월 25일에 공동으로 개최했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국회 토론회』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 공청회》를 갖게 되어 지금의 제심정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이 분주하고 들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앞장서서 힘써주신 김원웅 국회의원님과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에 속한 의원님들, 그리고 학살 사건이 있었던 지역 의원님들과 범국민위원회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썬록 오늘의 이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50여 년 간 방치되어 온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 특별법이 다음달 6월 임시국회에서 검토가 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어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학살되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수십만의 원혼들을 편히 잠들게 해주시고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명에 보내고 반세기 동안 가슴에 한을 안고 슬픔과 분노에 몸부림치며 버티어 온 저희 유족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채 의 진

민간인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초안)

장 완 익 변호사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대규모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및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인학살사건”이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민간인들이 학살 및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민간인학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후유장애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학살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 준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민간인학살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①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민간인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민간인학살사건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역사박물관과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3. 유골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제심과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7. 위령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8. 민간인학살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9.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⑥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⑧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간인학살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 소속 하에 민간인학살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민간인학살사건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진상 조사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희생자 및 그 유족, 관계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민간인학살사건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시설에 희생자 및 그 유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관계행정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⑧ 제7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⑨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⑩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⑪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⑫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⑬ 정부는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학살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민간인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2. 민간인학살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제11조(위원 · 증인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 ·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민간인학살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제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① 정부는 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령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 공간(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 조성
2. 민간인학살 역사박물관 및 사료관 건립
3. 인권 · 평화재단 건립
4.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 교육
5. 기타 명예회복 및 위령관련 사업

② 위령공간, 역사박물관 및 사료관 등의 운영 · 관리 등을 위한 인권 · 평화재단을 설립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

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 신고 등)

①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민간인학살사건 관련 피해 신고처를 설치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민간인학살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호적등재) 민간인학살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17조(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6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특별재심조항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 :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헌정질서파괴범죄)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

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이 되었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내지 제3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 내지 제3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면소 내지 공소기각 규정)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 민간인학살사건의 경우 사안별로 재심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재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다른 특별법과의 비교표>

	거창사건	제주4·3	의문사	인권위원회	통합특별법
위원회	없음	국무총리소속	대통령소속	국가기구	대통령소속
상임위원		없음	상임위원 2명 1급상당별정직	상임위원 3명 정무직	상임위원3명 1급상당별 정직
위원임기		2년	2년	3년	3년
사무국	없음	지원단, 간사1명 등 9명	사무국	사무처	사무국
상임			사무국장 이사관,별정직 2급	사무총장	사무국장 이사관, 별정직2급
조직			행정과 조사1과:기타 조사2과:경찰 조사3과:군 특별조사과	미비	
진상조사 보고서작성 기획단		15명 비상임 구성,전문위원 5명,조사요원 15명	없음	없음	
실무위원회		제주도	없음	없음	당해 시,도
업무		피해신고접수 및 조사사실 조사단설치 (시군,도)			피해신고접 수 및 조사
지원사업소		4급 1명 등 13명			

민간인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장 완 익 변호사

1. 통합특별법의 필요성

가. 입법 사례

민간인학살사건과 관련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거창사건특별법, 1996년 1월 5일 제정)과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2000년 1월 12일 제정)이 있으나 이들 법률은 민간인학살사건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한하여 진상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진상이 규명되었다는 전제 하에 희생자나 그 유족의 명예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위 두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구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 입법 청원

여러 다른 피해 지역의 희생자와 유족들도 자기 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개별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개별 특별법이 한꺼번에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사건이나 지역이 생기게 되어, 진상조사나 명예회복·위령사업이 중복되거나 사건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별 특별법 사이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그 시기가 늦어질 경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관련 자료가 없어져서 제대로 진상 조사를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다. 통합 특별법

그러므로 개별 특별법보다 통합특별법이 민간인학살사건 전반에 관하여 진상 규명을 하고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훨씬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통합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국무총리 소속하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지위가 격상되고 권한이 강화된 대통령 소속하의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충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 질 있을 것이다.

2. 초안 설명

가. 특별법의 목적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으로 하였다(1조). 희생자나 그 유족의 입장에서는 피해배상이나 관련자 처벌 등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우선 철저한 진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법의 목적을 위 두 가지로 한정하였고, 다만 진상보고서 작성 시 “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권고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10조 3항 1호).

나. 민간인학살사건의 정의

(1) 민간인과 주민

거창사건특별법 제2조 제1호는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하여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제주4·3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위 두 법률에서 말하는 “주민”사이에도 법률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으나, 어쨌든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그 지역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학살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 중에는 보도연맹사건이나 대전이나 대구 교도소에서 학살된 경우 등 “주민”이라는 개념으로만

정의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민간인은 주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비무장 상태의 모든 사람을 총칭한다. 즉 아무런 가해 의사가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장하고 지휘·통솔되는 조직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집단적으로 학살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민간인이라는 용어만큼 적절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민간인학살사건

(가) 특별법에서 “민간인학살사건”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민간인들이 학살 및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2조 1호).

먼저 민간인학살사건의 시간적 범위를 정부 수립 시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로 하였다. 즉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학살사건들이 그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진상조사의 시간적 범위가 확대될수록 서로 성격이 다른 사건이 포함되어 통합특별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진상조사 작업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 “학살 및 희생당한 사건”이라 하여 생명·신체상의 피해 이외에 학살과 관련된 경제적인 피해도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다) 제주4·3특별법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까지를 조사의 시간적 범위로 삼고 있어서 통합특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제주4·3사건은 당연히 민간인학살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나, 통합특별법에서 정의한 ‘한국전쟁을 전후한 학살 사건’과는 성격상 다른 면이 있고 또 이미 상당한 진상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합특별법의 조사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거창사건의 경우는 거창사건특별법에 진상규명 작업이 생략된 채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만이 담겨져 있어서 통합특별법에 의하여 진상규명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도 있다할 것이다.

다. 진상위원회의 구성

(1) 진상위원회

(가)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였고 상임위원 3인을 두어 상임위원회 성격을 강화하였다(3조 3항, 6항).

(나) 위원회의 업무는 민간인학살사건진상조사,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역사박물관과 사료관 건립, 유골 발굴 및 수습,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재심과 사면·복권, 위령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민간인학살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에 관한 건의, 호적 등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였다.

위원회의 진상조사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희생자나 그 유족의 피해 신고를 받아 개인적인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유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특별법과 비교하여 위원회에 추가되는 업무는 역사박물관 건립, 유골 발굴 및 수습, 재심과 사면·복권 관련 사항이다.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많고 이들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이들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골 발굴 및 수습을 유족이나 개별 단체가 하기에는 경제적,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대대적인 유골 발굴 및 수습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무국

진상조사작업을 실제로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아래에 조사과를 두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6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사무국 산하에 행정과, 조사1·2·3

과, 특별조사과를 두며, 조사1과는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의문사 사건을, 조사2과는 경찰관련 의문사 사건을, 조사3과는 군관련 의문사 사건을, 특별조사과는 위원장이 특별히 명하는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며 상임위원 2명이 조사1, 2과와 조사 3과 및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이와 같이 민간인학살사건과 관련하여도 사무국 내의 조사과를 가해자를 기준으로 군, 경찰, 기타 등으로 나누고, 특별히 노근리 사건과 같은 미군에 의한 경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조사과 등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실무위원회

민간인학살사건이 발생하였던 당해 시·도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관련하에 진상조사의 가장 1차적인 부분인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업무도 한다. 이는 제주도에 구성되어 있는 제주4·3실무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8조).

또한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민간인학살사건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도 하게 되는데, 실무위원회에 초안 제9조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라. 진상 조사

(1) 조사권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사권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민간인학살사건을 처벌하려면 공소시효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으며(물론 민간인학살사건은 전쟁범죄 내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지만, 처벌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국제법의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50년이 훨씬 경과한 사건이어서 관련자의 상당수가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문사 사건처럼 민간인학살사건도 군과 경찰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 정도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관련기간 등에 대한 자료 등 제출요구, 민간인학살사건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출석 요구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 등의 권한이 있어야 하며(9조), 조사자와 관련 증인을 보호하고(11조),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처벌(16조 내지 18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진상조사보고서

위원회는 3년 간 진상조사를 한 후 조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을 공표하여야 한다(10조). 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와 민간인학살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 명예회복 등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령 공간(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 조성, 민간인학살 역사박물관 및 사료관 건립,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 교육 사업을 하여야 하며, 위령공간, 역사박물관 및 사료관 등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12조).

만약 위령공간, 역사박물관, 사료관 등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르다면 종합적인 명예회복 및 교육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므로 가칭 인권·평화재단이라는 단일 조직에게 이러한 업무를 영속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권고 사항으로 포함시키겠지만,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중이더라도 정부는 임시적 조치로서 희생자중 치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치료와 의료지원금을,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은 50여 년의 쌓이고 쌓인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커져 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당장 필요한 일이다.

3. 결 론

우리는 20세기가 전쟁과 광기의 시대였으며, 그 잘못을 제대로 밝히기보다는 은폐하고 왜곡하여 없었던 일도 치부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도 역사이며, 그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역사의 희생자에게 그 잘못을 빌어 용서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우리에게 절박한 현재적 문제이듯이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도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하루라도 미루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20세기에 풀지 못한 숙제를 21세기의 첫해에는 꼭 풀어야 할 것이다.

통합 특별법이 다루어야 할 주요한 과제

이 영 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정책기획실장)

50여 년전,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슬하게 죽어간 백만의 원혼들이 반 세기가 지난 지금 새로운 울부짖음을 토하고 있다. 전국 기구인 민간인학 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의 출범이 그것이며, 지난 4월 30일 1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에 대한 공동 발의에 뜻을 함께 한 것이 또한 그것이다.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현재 한반도 남한의 현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첨 예한 문제이며 거의 유일하게 지역적 차별과 영호남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 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민간인학살과 관련한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지 금까지의 광주5.18과 거창, 제주4.3, 의문사 등의 특별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을 보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1. 민간인학살 특별법의 목적이다.

민간인학살 특별법의 목적은 민간인학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해 남북 당사자간의 평화와 화해의 무드를 조성해 가려는 공존의 시대에 부응하여 피학살자의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은 물론이려니와,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진정한 국민적 화해와 상생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다.

2. 피해자의 범주이다.

민간인학살은 책임 있는 남북 양 주체의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인 만큼, 좌우익의 피해사례를 모두 망라하여 적법한 사법적 처리과정이 아닌 한 사건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진압과 토벌과정의 좌

익·부역 혐의자나 통비분자,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 등이 그것이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국민적 정서와 향후 다가올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3. 피학살자 및 유족의 배상이 따라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용에 있어서는 피학살자 및 유족의 배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는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공식 입장 표명 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명예회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배상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인권을 논한다고 하면서 개가 차에 치어 죽어도 개 값을 물어주는 현실인데 하물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명이 살상되었는데 그것도 무고하게 죽었는데도 이를 애써 무시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 피해자에 대한 재심과 사면조항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용에 있어서 현장에서 학살당한 사람은 명예회복의 여지가 있지만 '운이 좋게도(?)' 재판의 형식을 통해 사형에 처해지거나 징역살이 한 사람은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 못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이 재판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특별재심절차를 밟아 무죄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든가, 오히려 재판의 불성립,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죄라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제주4.3 특별법의 경우, 당초 초안에서는 이 재심특별조항이 들어가 있었지만, 제정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이다. 이는 마치 재판과정에서 확정된 것은(예를 들면 좌익활동 같은 경우) 만고불변이라고 생각해 주민들이 움츠러드는 경우도 있고 진상조사과정에서도 관련기록 문서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왜냐하면 관련기록문서에 좌익활동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것 자체에 주목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5. 후속사업으로의 인권평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민간인학살에 대한 추가 진상보고서 보완작업이나 사료관 운영 및 교과서나 각종 정부기록 간행물에 반영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역사적 교훈의 확립이란 취지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금의 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6. 교과서나 각종 정부기록 간행물에 반영되어야 한다.

초·중·고등 교육 교재인 교과서나 이외에 각종 정부기록 간행물에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이후의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 교과서가 1차 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나, 정부기록물은 양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최근 국방부의 제주4.3사건 왜곡의 사례를 참고해 본다면 역사적 교훈의 확립이란 취지로 다시 살펴볼 때에도 민간인학살 사건은 그 동안 정부의 심한 왜곡으로 인해 국민들이 전혀 잘못 알고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한 전국민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7.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4.3과 의문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진상조사는 실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의 특별법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나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있게 하고는 있으나, 정작 조사의 현장에서는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여전히 사건의 은폐 내지는 축소로 일관하고 있어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권한을 갖고 있어야만 실제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국내법적 모색

백 승 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논의의 필요성

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법률적 접근 유형으로 크게 세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하나는 국제인권법의 기초 위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전쟁의 주요한 당사국으로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 미국의 국가책임을 미국 안에서 묻는 방안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법 체계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 가지 방안은 선택적이고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병행할 필요가 있고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국내법적인 해결책의 모색이다.

이는 피해자의 전부가 우리 사회 안에 있고 가장 중요한 가해자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국가 자신이라는 점에서 국가체계 안에서 국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해결 방안의 모색과정에서부터 그 종결까지의 성과는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국내법적인 해결 방안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나열하여 본다.

나. 국가책임을 확정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냉전질서와 전쟁(또는 준전쟁)상황 아래서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당사자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그 후 반세기 동안 진행된 국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의 본원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현실 속에서 드러내 국가 공권력이 쉽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준 사건이다.

그리고 국가권력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그 시기 뿐 아니라 그 후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통의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내법적으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국가 체제가 스스로 그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체제 자체를 이용하는 국내법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책임의 실현방안 모색 (책임의 의무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존재가 증명할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 인정이 언명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과거에 대하여 장래의 의무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화해를 시도하는 경우 결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국내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장래의 구체적인 국가 의무를 설정케 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입법, 사법 기능의 복원

국가권력의 3가지 큰 부분 중 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 기능은 과거 50여 년 동안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였고 결국 기본권의 보호는커녕 침해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침해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주는 역기능을 보여 주기만 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과 해결을 요구하는 결정을 구하는 과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 보호하는 위 두 기능을 헌법 원리에 따라 재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마. 그 후 계속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 작업의 하나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산발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과거 청산 작업의 전범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민주적 인권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제도수립의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바. 국제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의 전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진실 발견이 전제되고 진실 발견은 가장 주요하게 국내법적인 접근으로 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경우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 하는데 국내법적 구제수단을 마치는 것이 전제이기도 하다.

사. 미국에 대한 국가책임 제기의 균형